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들을 위해 직업훈련, 소득창출지원사업 등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공공주택사업 규모, 지원대책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투기방지를 위해 공공택지 업무관련자,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 등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공익사업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에 대해 전매를 금지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으로 공급되는 이주대책용 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도 전매를 제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대책 수립 등(안 제21조의2 신설)

주민지원대책을 수립대상이 되는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을 50만 제곱미터로 하고, 시·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 지원을 위해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지원사업, 직업알선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제한(안 제24조제5항제4호 및 제6항 개정)

투기방지를 위해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당시 업무관련 기관, 용역업체 등 종사자와 해당기관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그리고,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제공·취득하여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공급되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을 제한하고자 함

다. 공공주택사업 이주자택지 전매제한(안 제25조제1호 삭제)

투기방지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이주자택지에 대한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일관된 제도운영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으로 공급되는 이주대책용 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도 전매를 제한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이견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4. 1. ~ 5. 11.)

대통령령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2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공공주택지구의 면적 5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제2항제1호, 제2항제3호, 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직업전환훈련, 직업알선, 고용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다.

② 법 제27조의3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시행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업을 희망하는 공공주택지구의 주민(공공주택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2. 공공주택지구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단체”라 한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3. 공공주택지구의 주민(공공주택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알선

③ 관계 시·도지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직업전환훈련의 대상, 훈련방법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시장·군수·구

청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산림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공공주택지구 에 거주하는 주민(공공주택지구 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 한다)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 또는 제5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단서”를 “본문”으로, “우선 공급하는 경우”를 “공급하는 경우 조성된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지구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으로, “공급해야 한다”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제2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및 제25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주택지구에서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된 주택지구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1조의2(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2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공공주택지구의 면적 5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제2항제1호, 제2항제3호, 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직업전환훈련, 직업알선, 고용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다.</u> <u>② 법 제27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시행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전업을 희망하는 공공주택지구의 주민(공공주택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u> <u>2. 공공주택지구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단체”라 한다)에</u>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3. 공공주택지구의 주민(공공주택지구
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알선

③ 관계 시·도지사는 제2항제1
호에 따른 직업전환훈련의 대
상, 훈련방법 및 훈련수당의 지
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
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을 들어 정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산림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
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
계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
하는 사업을 제2항제2호에 따라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
자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
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
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토지를 공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조성된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지구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 3. (생략)

한다)에게 공공주택지구에 거주하는 주민(공공주택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제5호-----

-----.

1. ~ 3. (현행과 같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의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정하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자로서 주택지구 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자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

[illegible]

득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5. ~ 18. (생략)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하는 경우 주택지구 내 토지의 소유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⑦ ~ ⑨ (생략)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32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제

----- 포함하며,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5. ~ 18. (현행과 같음)

⑥ -----
----- 본문 -----
----- 공급하는 경우 조성된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지구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지구 ---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

----- 제2호 -----

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공공 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조성 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 만 해당한다. 1. 「<u>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u>」에 따른 <u>이주대책의 실시 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 지의 경우</u> 2. ~ 11. (생 략)	----- ----- ----- -----. 1. <삭 제> 2. ~ 11.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4541